

--주주님께

제 44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0 조에 의거 제 44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정관 제 22 조 및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 년 03 월 30 일(월요일) 오전 10 시 00 분
2. 장 소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117-12 본사 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결과 보고의 건

-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 44 기(2025.1.1 ~ 2025.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	개정	개정이유
제11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1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 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 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 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5호는 「상법」제341조의4제2항제5호의 경우로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정 할 수 있음.	개정 상법에 따라 주 주회의 자에 대한 자 기주식 처분에 필요 한 처분사유 규정을 반영함

현행	개정	개정이유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제23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u>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u>	- 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제32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수) <u>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개정 내용을 반영함
제36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항신설, 기존 제2항, 제3항, 제4항 항번호 변경>	제36조(이사의 의무) ① <u>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u> ② <u>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 내용을 반영함
제37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u>6배(독립이사는 3배)</u>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개정내용을 반영함
제39조 (이사회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 (이사회회의 결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u>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u> <u>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u> ③ (현행과 같음)	- 이사회 전화회의 인정에 대한 자구수정
제44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으로 감	제44조 (감사의 수) <u>회사는 1인의</u>	- 감사 수 변경에

현행	개정	개정이유
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u>상근감사를 둘 수 있다.</u>	다른 자구수정
제47조 (감사의 직무 등) ① ~ ③ (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 및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감사의 직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4항의 <u>규정</u> 및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준용규정 항이동에 따른 준용규정 변경 사항 반영
<신설>	<u>부칙</u>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신설

제 3 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 3-1 호 의안 : 사내이사 윤준식 후보 선임의 건 (재선임)

- 사내이사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추 천 인			
윤준식	1981.10.12	現 (주)태광 대표이사 前 TK Fitting USA 총괄 - 미국 남가주대 기술경영석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보통주 45,000주 보유	특수관계자
	이사회			

성 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윤준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 3-2 호 의안 : 독립이사 장준흠 후보 선임의 건 (신규선임)

- 독립이사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추 천 인			
장준흠	1972.02.16	現 부경회계법인 회계사 前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前 성도회계법인 회계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성 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장준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 4 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제 4-1 호 의안 : 상근 감사 정동진 후보 선임의 건 (재선임)

- 상근감사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추 천 인			
정동진	1958.02.24	現 (주)태광 감사 現 최진회계사무소 세무사 前 국세청 서기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성 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정동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 5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0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및 모바일 주소

: 「 <http://vote.samsungpop.com> 」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3월 20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9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신분증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7. 기타사항

상법 시행령 제 31 조제 4 항 4 호에 따른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 주전까지 당사 홈페이지(www.tkbend.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03 월 12 일



주식회사 태 광

대표이사 윤 준 식, 윤 원 식 (직인생략)